투표용지 유 · 무효 인정기준

1. 유효사례

사 례	유·무효	비 고
○회송용 속봉투가 개봉되었으나 회송용 겉봉투가 밀봉된 경우	유효	스테플러 밀봉도 인정
○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되었으나 회송용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	유효	〃
○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지지 후보자 이름과 기표내용이 명확한 경우	유효	
○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	유효	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:유효 시도지부장 투표용지:무효
○동일 후보자란에 2개이상 기표되었으나 기표 내용이 명확한 경우	유효	<별첨 1 참조>
○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	유효	<별첨 2 참조>
○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을 넘은 경우	유효	<별첨 3 참조>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심사하여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실한 경우에만 유효
○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 - 기표란에 50% 이상 기표된 경우	유효	<별첨 4 참조>
○후보자란에 큰따옴표를 추가(“○”)하여 기표한 경우	유효	
○동일 후보자란에 기표했으나 기표방법을 수정한 경우 - 동일 후보자란에 잘못된 형태로 기표하여 화이트, 칼, 필기구 등으로 수정한후 “○” 또는 “√”로 다시 기표한 경우	유효	<별첨 5 참조> 단, 수정한후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
○동일 후보자의 기호란과 기표란에 모두 “○” 또는 “√”로 기표한 경우	유효	단, 기호란에만 표시한 경우는 무효

※ 선거관리규정 제40조 및 제44조 개정(12.2.16)에 따라 형광펜, 연필, 붓뚜껑 등을 사용하여 “○” 또는 “√”로 기표한 경우도 유효 처리

※ 기표 내용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동 인정기준에 없는 유·무효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례별로 결정

2. 무효사례

※ 사유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(무효투표) 각호의 규정을 준용

사 례	유·무효	비 고
○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- 투표용지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	무효	사유 1
○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- 기표란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, 기호란에만 "○" 또는 "√"로 표시한 경우	무효	사유 2 <별첨 6 참조>
○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	무효	사유 3 <별첨 7 참조>
○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	무효	사유 4
○"△", "x", 문자,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- 기호를 기재하거나, 지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	무효	사유 5 <별첨 8 참조>
○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-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회송한 경우 - 대한약사회장 속봉투와 지부장 속봉투를 바꿔 사용한 경우 - 2개 이상의 회송용 봉투를 일반 서류봉투(또는 박스)에 넣어 회송한 경우	무효	사유 6 회송용 규격봉투 외에는 모두 무효처리하며 개봉하지 아니함
○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가 모두 개봉된 것	무효	사유 7
○회송용 속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-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가 2매 이상인 경우 : 무효 -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와 지부장 투표용지가 각각 1매씩 들어 있는 경우 :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유효	무효	사유 8

○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- 회송용 겉봉투안에 속봉투와 투표용지가 별도로 들어 있는 경우 - 회송용 겉봉투안에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경우 - 선거인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한 경우 -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	무효	사유 10
○수정하여 다른 난에 기표한 것 - 기표 내용을 화이트, 칼, 필기구 등으로 수정하여 다른 난에 기표한 것	무효	사유 11<별첨 9 참조>
○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 **- 기표란에 50% 미만 기표된 경우**	무효	사유13<별첨 10 참조>
○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	무효	사유 99
○<u>투표용지에 기표 표시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</u>	무효	기타 사유

<별첨 1> 한 후보자 란에 2이상 기표

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: <u>유효</u>

< 사례 1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◯ ◯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인

< 사례 2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
2	□ □ □	◎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2>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

⇨ 구분선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 : <u>유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○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3>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을 넘은 경우

⇨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심사하여 <u>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확실한 경우에 유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○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4> 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

⇨ 기표란에 50% 이상이 기표된 경우 : <u>유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○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인

<별첨 5> 동일 후보자란의 기표방법을 수정한 경우(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 포함)

⇨ <u>유효</u>

< 사례 1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
2	□ □ □	✔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 사례 2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●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6> 기호란에만 기표한 것

⇨ <u>무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①	◇ ◇ ◇	
2	□ □ □	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7>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

⇨ <u>무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○
2	□ □ □	○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

<별첨 8> △, x, 문자, 숫자 등으로 기표한 경우

⇨ <u>무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
2	□ □ □	2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인

<별첨 9> 기표내용을 수정하여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

⇨ <u>무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⊗
2	□ □ □	○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인

<별첨 10> 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

⇨ 기표란에 50% 미만이 기표된 경우 : <u>무효</u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표 용 지

기호	후보자명	기표란
1	◇ ◇ ◇	
2	□ □ □	○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